

붙임) 관련근거

■ 규정 강화 원인

- 제8회 박원욱병원장배 부산여성연맹 대회(2026.05.10.) 기간 2026 양산12경 전국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2026.06.5.09.~10.) 참가
- 2026 대한 디비전리그 대회(2026.08.23.) 참가선수가 2026 밀양 아리랑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2026.08.23.) 참가

■ 관련 규정

BADMINTON BUSAN ASSOCIATION

대한협회 - 회원등록 및 대회 참가자격 운영 규정

제7조(대회 주최/주관단체의 의무) 대회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시·군·구협회는 주최/주관하는 대회개최에 대하여 시·도협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도협회는 대회개최에 관한 자체 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본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주최/주관단체는 대회 참가신청을 BKplay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BADMINTON BUSAN ASSOCIATION

회원관리와 분담금 납부 규정

제 3 조 [협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 규약 제5조제1항에 의거 구·군협회와 산하클럽 및 회원은 본회 운영과 경기대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2.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대회나 사업에 후원 또는 참여하는 일
 3. 임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4. 건의 및 소청
- ② 구·군협회나 산하클럽 또는 회원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 규약, 제 규정의 준수 및 총회 의결사항 준수
 2. 아마추어 스포츠 규정의 존중
 3. 이사회에서 의결한 등록비 및 분담금의 납부
 4. 본회 제반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 준수
 5. 회원의 이동사항 (가입, 제명, 이적 등)보고
 6. 구·군협회 및 본회 회원등록
- ③ 산하클럽 회원은 개인의 운동역량 강화, 친교 모임 등을 위해 클럽활동 이외 사설 모임에 참여

할 수 있지만, 산하클럽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④ 배드민턴 사설 모임은 다음 사항은 준용해야 하며, 만일 위반할 때 별표 2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산하클럽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2. 산하클럽의 주 활동하는 운동 장소를 별도 대여·대관 또는 입찰에 참가하여 기존 산하클럽이 피해를 받는 행위
 3.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 ⑤ 본회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업무방해를 한 자와 제2항에 따른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생활체육 대회 운영 규정

제 6 조의2 [회원관리 및 회원의 의무] ① "본회" 등록회원의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협회는 BKplay 등록회원의 중복등록, 허위등록 및 자격상태를 관리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가.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 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다. 동일인이 중복 등록한 경우
 - 라. 협회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 규정 및 대회요강 준수
 2. 본인 명의로만 대회 참가
 3. BKplay 등록정보의 정확성 유지
 4. 자격정지 기간 중 대회 미참가
- <조항 신설 2026.08.19.>

제 8 조의2 [타 지방대회 출전] ① 협회의 회원은 "본회"가 승인한 지방 오픈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승인대회는 시·도 및 시·군·구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본회"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② "본회" 회원은 타 지방대회 참가에 따라 대회개최 요강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대회에 출전코자 하는 회원은 전 대회 입상경력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역의 해당 급수에 맞게 출전하여야 한다.
- ④ 지방대회 출전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대회 요강에 따라 출전 급수와 연령대로 신청해야 한다.
 2. 대회 출전비는 행사 주최자의 계좌로 본인이 입금하여야 한다.
 3. 지방 오픈대회는 부산의 승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지방대회 참가 조건은 "본회" 또는 연맹체, 구군협회가 주최·주관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기간에는 지방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그 외 기간에는 1항에 따라 승인된 대회는 회원은 지방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 ⑥ 5호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본회" 또는 연맹체, 구군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출전 정지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6.08.19>

제 8 조의3 [사모임 대회] ① "본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회원은 참가할 수 없다.

- ② 위반한 회원에게는 "본회" 또는 구군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출전정지, 회원 자격 정지 등으로 징계할 수 있다.

- ③ 구군협회가 2호에 따라 징계하여 "본회"에 요청한 경우 "본회"도 대회 출전정지 등을 징계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6.08.19.>

제 32 조 [선수 윤리규정] ① "본회"에 등록한 회원이 타 시·도 소속의 클럽에 정회원으로 이중 가입 하였거나, 타 시·도에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본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때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출전 시 부정 선수로 판단한다.

- ② 이중 가입하였을 때 "본회" 주최·주관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발각될 때 전 경기 몰수 처리하고 "본회" 및 타 시·도 협회에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한다. <개정 2026.08.19.>

- ③ "본회"가 주최·주관한 대회에 부정 출전하여 얻은 성적 및 승급은 사후에라도 박탈한다. [파트너 포함]

- ④ 부정 출전을 통해 입상하였을 때 그 시상품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이행될 때까지는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 ⑤ 대회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 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⑥ "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원을 포함한 사모임 대회는 참가를 불허한다. [단, 대한배드민턴협회 주최대회, "본회"의 주최·주관·후원 대회와 겹치지 않고 "본회"의 협조를 요청하여 승인한 시도 및 시군구배드민턴협회 주최대회로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열리는 대회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26.08.19.>

- ⑦ "본회" 규약 제2조제2항에 따라 영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회원은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26.08.19.>

- ⑧ "본회"에 등록한 생활체육 지도자는 대회출전이나 승급을 빌미로 회원들에게 규정되지 않은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6.08.19.>

- ⑨ "본회"가 주최·주관한 대회 기간 내에는 타 시도 대회의 참가는 불허한다. 단 "본회"가 승인한 대회는 가능하다. <개정 2026.08.19.>

제 36 조 [상벌] ①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서 난동 및 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의 징계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할 때 "본회" 생활체육위원회에 제청하여야 하며, 징계는 "본회"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확정된 징계에 대해 "본회" 스포츠평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08.19.>

2. "본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징계 기준은 표4과 같다.
3. 위 사항 발생 시 주의사항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본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 ② 대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동호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는 강제로 퇴장시킬 수 있다.
- ③ 대회 진행요원의 결정 및 중재에 불복하는 집단행동 또는 출전팀 간 폭력행위 발생 때 양 팀 모두 전 게임에 대하여 몰수하며, "생활체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라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대해 주최측과 참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주최측의 관계자는 "본회" 주최대회에 출전정지 12개월 이내로 징계할 수 있다.
 2. 구·군배드민턴협회가 대회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대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본회" 주최대회에 구·군배드민턴협회를 출전정지 12개월 이내로 징계할 수 있다. 또한 "대한 배드민턴협회"가 징계를 하였을 경우도 이와 같다.
 3. 참가 회원에 대해 "본회" 주최대회에 출전정지 6개월 이내로 징계할 수 있다.

<항신설 2026.08.19.>

- ⑤ 대회 참가자격 위반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징계는 표 5와 같다.
 1. 경미한 위반
 - 가. 등록 여부 확인 과정에서 단순 착오 또는 행정상 오류로 미등록자가 참가한 경우
 - 나. 즉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참가를 취소하거나 시정한 경우
 2. 중대한 위반
 - 가. 주최 또는 주관단체가 참가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미등록자가 참가한 경우
 - 나.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된 경우
 - 다. 미등록 참가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3. 고의적 위반
 - 가. 주최 또는 주관단체가 미등록자임을 알고도 참가를 허용한 경우
 - 나. 등록 여부 확인을 회피하거나 허위로 등록된 것처럼 처리한 경우
 - 다. 제재 또는 시정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항신설 2026.08.19.>

- ⑥ 징계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2. 초범이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

<항신설 2026.08.19.>